

예금보험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!

파산된 금융회사에 예금하셨던 분들은
그동안 수령하지 않으신 **예금보험금, 파산배당금, 개산지급금 정산금**을
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**원스톱서비스**를 통해 찾아가세요!

▶ **홈페이지** (<http://www.kdic.or.kr>) ‘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/신청’ 참조

▶ **안내전화** 1588-0037 → 3번(예금보험금,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 정산금)

〈파산금융회사 미수령금〉

[예금보험금]이란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·허가 취소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시 공사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[파산배당금]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[개산지급금 정산금]이란 파산배당금이 공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(개산지급금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.

〈**상속인 안내**〉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 접수 후 3~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www.kdic.or.kr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〈**해외거주자**〉 필요서류 제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증, 또는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경우에 접수 가능합니다.

전국은행연합회 **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**(<http://sleepmoney.or.kr>) 또는
행정안전부 **정부24**(<http://gov.or.kr>) ‘나의 생활정보’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